

2024 찾아가는 제주·강원지역 자활정책포럼

지역자활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신청방법 자활정보시스템 내 교육신청
<https://lms.welfareinfo.or.kr/main/main.do>

신청기간 2024. 3. 25. (월) ~ 2024. 4. 12. (금)

신청문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02-3415-6933



**2024
4.18 (목)
14:00~16:00**

제주현대미술관 대강당
(제주시 서광로 27길 16, 2층)

사 회 김미향 | 제주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기조발제 1 지역자활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제주 사례중심)
김경환 | (사)일하는사람들 대표

기조발제 2 지역자활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강원 사례중심)
박미라 | 강원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토 론

- 좌장** 남진열 |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 토론1** 이경우 |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정책위원장
- 토론2** 이강익 |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토론3** 강호진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 토론4** 양병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5** 안미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지원실장

주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동주관 | 제주광역자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광역자활센터

산림 한국 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목 차

2024 찾아가는 제주·강원지역 자활정책포럼



1 행사안내

[사회] 김미향 (제주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2 발표 및 토론

발표 1 자활사업 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제주 사례”	5
김경환 <(사)일하는사람들 대표>	
발표 2 자활사업 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강원 사례”	15
박미라 <강원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토론 1 강원형 표준조례안 마련을 통한 자활사업 지원 제고	37
이경우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정책위원장>	
토론 2 자활기금 활용 인식전환을 통한 조례 개정 구체화 필요	43
이강익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토론 3 권역자활 정책포럼	49
강호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토론 4 지역자활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55
양기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	
토론 5 자활사업지원조례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59
안미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지원실장)	

3 별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65
------------------------------	----



자활사업 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제주 사례”

김 경 환
(사)일하는사람들 대표



제주 자활지원조례 적용실태와 개선 방향 - 자활사업 조례 및 관계 법령 검토를 중심으로

(사)일하는사람들 김경환



1. 들어가는말

❖ 취지 및 방향

- 제주-강원 권역별 정책포럼을 통해 각 지역 현안 해결책 모색
- 제주지역 자활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특화된 제주 자활사업 분석
- 새로운 자활 정책 환경 검토와 제주 지역 자활조례 개정 방향 모색
- 지역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체계 정비 방안 모색
- 지역자활기금과 중앙자활자금과 관계 법령 검토 및 상생방안 모색

2. 제주 자활 사업 현황

□ 4개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023.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자
		소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합계	751	717	314	352	47	4	34
제주시	513	502	209	284	9	0	11
서귀포시	238	215	105	68	38	4	23

□ 자활근로사업 현황 (2023. 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근로 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Gateway		청년자립 도전형	
	사업 수	인원	사업 수	인원	사업 수	인원	사업 수	인원	사업 수	인원	사업 수	인원	사업 수	인원
합계	48*	751	2	93	24	330	5	21	12	114	4	183	1	10
제주시	29	513	1	66	16	232	3	15	6	65	2	125	1	10
서귀포시	19	238	1	27	8	98	2	6	6	49	2	58	-	-

2024. 제주도 자활지원계획 자료 인용

(사)일하는사람들

3. 제주 지역 자활사업 관련 조례

❖ 지역 자활 조례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법령 집행과 주민 복리 증진
-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 자활 사업 추진
- 지방 자활사업의 추진 법적 근거 마련 등

❖ 제주 지역 자활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2007)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사업 지원 조례(2017)

(사)일하는사람들

2. 제주 자활 사업 현황

□ 자활기업 현황 (2023. 12월 말 기준)

연번	소속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명	사업내용	참여자 수
지역자활센터 4개소, 자활기업 20개소, 참여자 132명(수급자 69, 차상위 8, 일반 55명)				
1	제주수놓음 지역자활센터 (6)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건축물일반청소, 방제서비스	10
2		유한회사 편한집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5
3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14
4		제주희망협동조합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대리 등	16
5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4)	마켓프레쉬 주식회사	슈퍼마켓	19
6		살림과드림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7
7		영농조합법인제주다	비알콜음료 도매업, 차류가공업	4
8		제주담다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3
9	서귀포일타나눔 지역자활센터 (7)	GS25서귀광장점	체인화 편의점	4
10		농업회사법인 로즈마리농수산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과실작물 재배업	3
11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복합비료 제조업, 그 외 기타 건물마무리공사사업	28
12		제주고장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3
13		GS25서귀중앙점	체인화 편의점	4
14		한천천밀반찬 판매전문점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5
15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5)	우리동네분식가게	분식업	3
16		진동산 마트	슈퍼마켓	3
17		철수와 영희	분식 및 김밥전문점	2
18		한끼	한식 음식점업	4
19		행복한가게세탁소	가정용 세탁업	2
20		행복한집수리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3

2024. 제주도 자활지원계획 자료 인용

(사)일하는사람들

4. 제주 지역자활 조례 제정 근거와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2007)

- 제정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2022. 1. 28.>
-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주요 내용

- 자활계정의 용도 : 위 시행령 이외에 자활센터, 사업단, 자활기업 기능보강 및 임대료 지원과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교육장 설치 등의 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

- 조례 제4조의2(자활계정의 용도)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 6.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의 기능 보강 및 임대료 등
- 7.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 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사)일하는사람들

4. 제주 지역자활 조례 제정 근거와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사업 지원 조례(2017)

■ 제정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보장기관의 책무. 특히 법 제4조 제4항은 조례로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의무

■ 주요 내용

-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 자활사업 활성화 정책 실시(판로, 우선위탁 및 임대, 임대료, 기능보강 등)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자활사업 전문가 채용 지원(제주특별자치도 특화 조항)

- 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사업 실시 비용 지원(제주특별자치도 특화 조항)

(사)일하는사람들

5. 지역 자활조례 적용 현황(재정 투입을 중심으로)

□ 제주 자활기금 사업 예산 집행(2023)

(단위 : 천원)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 추진] 10개사업, 455백만원 (2023년 기준)

○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 13명, 13,000천원

○ 자활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 4개 기업, 30,000천원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 45건*, 267,625천원

- 자활근로사업단 22개소 141,770천원, 자활기업 23개소 125,855천원

○ 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 5개소, 7,500천원

- 자활근로사업단 3개소

- 자활기업 2개소

○ 자활기업등 지역특성화사업 지원 : 2개소, 30,000천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 20명, 9,479천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 141명, 8,000천원

○ 저소득층 운전면허 지원 : 22명, 18,000천원

○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 35가구, 21,000천원

○ 사)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 1개소, 50,000천원

2024. 제주도 자활지원계획 자료 재인용

(사)일하는사람들

5. 지역 자활조례 적용 현황(재정 투입을 중심으로)

□ 제주 지역 자체 사업 예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4년	2023년	증감액	재원
총 계		1,139,111	1,061,605	77,506	
1. 자활근로사업 내실운영 및 참여자 지원 강화		76,000	76,000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15,000	15,000		자체
	수급자등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10,000	10,000		기금
	자활사업 참여자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18,000	18,000		기금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21,000	21,000		기금
	자활기능강연대회	12,000	12,000		자체
2. 자활사업 핵심 인프라 지원 강화		610,486	601,380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164,100	164,100		자체
	지역자활센터 자활전담인력 지원	339,806	333,060	일몰예정	자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98,580	96,220		자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교육 지원	8,000	8,000		기금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3.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운영 활성화 지원		451,125	451,12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283,625	283,625		기금
	자활기업등 대한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7,500	7,500		기금
	자활기업등 지역특성화 지원	30,000	30,000		기금
	자활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30,000	30,000		기금
	자활기업 등 용자지원	100,000	100,000		기금
4. 자립기반 조성 및 탈수급 촉진		15,000	15,000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15,000	15,000		기금

2024. 제주도 자활지원계획 자료 재인용

(사)일하는사람들

Company Logo

6. 제주 지역 자활사업 주요 특징 및 현안

❖ 주요 특징(조례 기반 자활사업 현황 분석)

- 제주는 자체(지방) 자활사업 예산 약10억 투입(기금이 약4억5천-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제외)
- 자체 사업중 센터 전담인력 및 운영비 추가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특히 전담인력은 4명으로 시작하여 사업 증가와 특화 사업(일자리 취업 알선 등)으로 현재 9명으로 증가함.
- 자활기금 사업은 2007년 전국 최초로 무담보무보증 융자 사업과 2013년 최초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장 임대료 지원 등 비용자 사업 3억7천만원과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약10년 동안 매년 4억 내외의 자활사업을 진행함. 특히 이 사업들을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집행하면서 협회 1인 인건비 포함 운영비를 투자하였음
- 제주 지역은 2007년 자활기금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시군 통합 조례) 이후 국가 자활사업 추진은 물론 자활기금 및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조례에 명시된 다양한 자활사업을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보여짐

(사)일하는사람들

6. 제주 지역 자활사업 주요 특징 및 현안

❖ 제주 지역 주요 현안 및 새로운 자활사업 환경

- **25년부터 일몰 고리표가 붙은 4개 자활센터 전담인력 지원 사업(9명)**
 - 20여년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따른 자연스런 인력 증가와 국가위임사무의 경직성(인력지원한계)을 극복한 모범 사례임.
- 다양한 자활기금 사업 집행을 맡았던 **지역자활센터협회 기능이 광역자활센터 출범으로 역할 조정 및 재정립이 필요함**
 - 24년부터 협회 운영비 지원이 일몰되어 사무국 상근 인력 없어짐
- **뚜렷한 세입이 없어 새로운 자활사업과 예산 증액이 어려워 지는 지역 자활기금**
 - 지속적인 일반회계 전출의 어려움과 기금 집행의 경직성
- **중앙자활자금 사업 실행에 따른 지역자활기금 사업 및 자체사업 항목 조정 검토**
-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출범으로 한국자활개발원과의 연계 강화 및 지역 자활기업의 활성화 환경 조성(중앙자활자금 적극 활용)**
- **자활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제주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사)일하는사람들

7. 제주 자활사업 개선 방향

❖ 제언2. 지역 자활사업 체계 정비와 자활기금 개선 방안

- **자활사업 체계 정비(전달체계 체계화)**
 - 한국자활개발원(중앙자활자금) – 전국 광역자활센터(지역 집행) –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 자활기업 지원에 대한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역할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
 -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 육성(인큐베이팅 및 행정관리 지원)
 - 광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 성장 활성화 지원(공모방식 탈피 등)
 - 중앙자활자금 사업, 광역사업, 도 자체 및 기금 사업 중복 등 재검토 조정
- **중앙자활자금과 지역자활기금의 상생 방안 모색**
 - 중앙자활자금은 전국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30%로 조성(2019년 4분기부터 조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39호, 2019. 1. 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18년을 기준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중앙자활센터 1개,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는 광역자활센터 14개소 및 지역자활센터 249개소가 있음.(이때 중자는 개발원이 됨)
 -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으로 설립되고 서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수행에 어려움.... 한편,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립·자활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의 적극적인 실시.... 이에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려는 것임.
 - 지역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조성되며 세입은 기초법 시행령에 명시
 - 기초법 시행령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4. 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사)일하는사람들

7. 제주 자활사업 개선 방향

❖ 제언1. 현안 해결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자활 조례 개정 방안

- **지역 특화 자활사업 인건비 지원 명시(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지원 조례)**
 - 제4조(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6. 지역 특화 자활사업 추진 인건비 지원(신규. 6호로 삽입)
 7. 그 밖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광역자활센터 설치와 기능 신규 조항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지원 조례)**
 - **중전 조례 지역자활센터 협회 조항의 기능 재조정**
 - 제5조의2(광역자활센터)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전체 신규 조항)
 1. 자활기업 성장 활성화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3.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4.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
 5. 광역단위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 지원
 6.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역자활센터협회 역할 재조정(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지원 조례)**
 - 제8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불드체 신규 삽입 및 변경)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 권익 향상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
 4.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기타 개정 사항

- 제5조(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 제목을 지역자활센터 지원으로 변경.
-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 삭제(자활지침에 광역자활기업 있음)

(사)일하는사람들

7. 제주 자활사업 개선 방향

❖ 제언2. 지역 자활사업 체계 정비와 자활기금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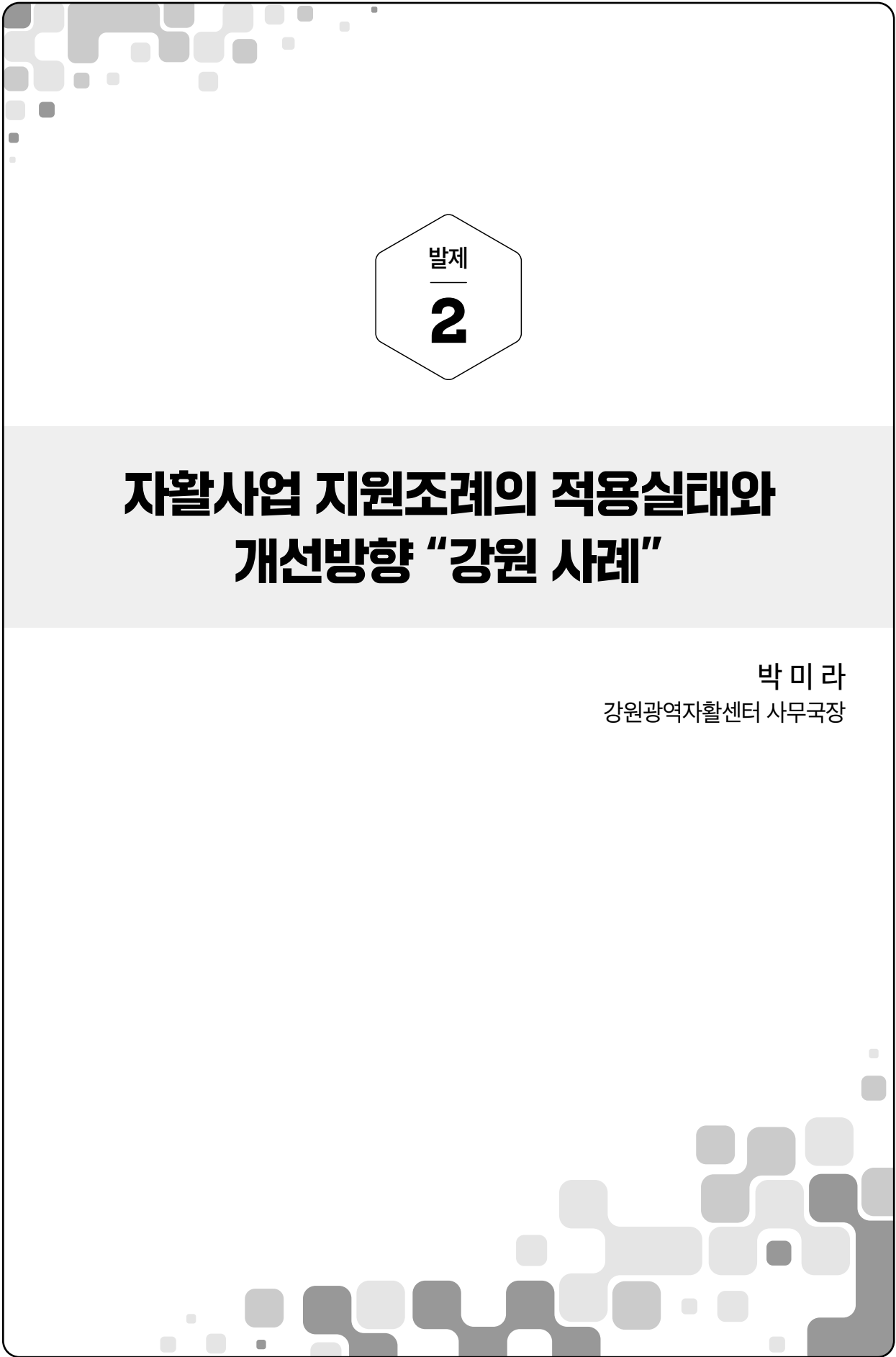
- **중앙자활자금과 지역자활기금의 상생 방안 모색**
 - 중앙자활자금은 2019년 자활제도개선 TF와 기초법 개정 이유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적극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재정이며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 또한 중앙자활자금은 전국 지역자활센터와 참여주민들의 적극적인 자활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협력과 협동의 재원이며 이를위한 기들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에서 나옴
 -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은 한단계 성장하여 또 다른 수급자 채용과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자활기금은 지속적인 지역 투자로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는 실정.(다만, 지역자활기금이 없거나 집행 실적이 없는 곳이 많은 곳이 문제)
 - 따라서 지역의 특화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자활자금이 필요하며 중앙자활자금 조성액의 광역단위 일정비율을 광역자활자금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음. 광역자활자금은 지역내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광역자활센터가 집행하도록 함(자활기금의 환원)
 - (가칭) 광역자활자금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이상)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계획에 따른 재정(경상비 보조 및 시설비 등 기능 보강 항목)

(사)일하는사람들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김 경 환

MEMO



발제
2

자활사업 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강원 사례”

박미라
강원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강원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박 미 라

조례는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하여, 실효적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적 활성화 위한 확장성을 갖춘 지역단위의 기초적 법적 기반이다. 우리 지역 자활사업 지원조례는 과연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실태는 어떠한가, 지역특성에 기반한 실효성과 확장성을 갖춘 조례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I. 서론

○ 지방자치와 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법령 및 중앙 정부의 정책을 떠나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조례는 더욱 지역사회 자활사업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지역사회 복지 및 사회적경제 등 영역의 단체들은 지역 중심 주민자치 활동이 강화되고 지역단위의 자원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제안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 그러나, 자활사업은 지역사회의 경제, 산업여건, 주민성, 참여주민의 역량, 해당 시도(시군)의 시책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을 추진하기 보다는 행정적 전달체계 내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도 단위의 자활지원조례는 지역특성에 기반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도 단위의 자활지원조례는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기 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시한 기본적인 보장기관의 기능과 역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조례(이하 강원 자활지원 조례라고 함)의 경우, 2019년 지역자활센터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그 해 민·관 토론회를 통해 아젠다를 형성하고 같은 달 4월에 제정되었다.

- 강원도의 경우, 최초 당시 중앙 정부의 자활사업 개편방향(문재인 정부의 자활사업 개편방향(2018-2020))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수 증가 및 자활사례 관리 활성화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같은 해 복지부 자활사업 중점 추진과제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 유입 구조 개선을 통한 참여자 확대”가 우선순위 과제로 되어 있었음을 덧붙인다. 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현장에서는 참여자 확대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써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사례관리사 배치 지원 등의 이슈를 자활지원조례 제정과 더불어 첫 번째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현실화하였다.

- 2019년 최초 제정된 이래 5년이 경과된 지금, 자활사업의 현장의 실태도, 중앙정부의 정책도, 지역사회의 특성도 함께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강원도의 경우에는 단순 용어 개정 사유 외에는 현안 분석에 기초한 적절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강원과 제주와 같은 특별자치도는 법률에 의거한 자치권이 보장된 도단위 행정구역으로서,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 문화적, 산업적 여건 상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지역특성에 기반한 정책(조례)가 더욱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발제자는 자활사업(현장)의 실태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활성화의 교두보적 역할을 기대할만한 자활사업 지원 조례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조례의 현황 및 적용 실태

1. 전국단위 자활지원 조례 내용과 특장점 비교

- 전국 시도의 자활지원조례는 경기도로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모두 16곳이다. 광역시·도 중 경기도는 2009년 12월 31일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16곳까지 제정이 확대되었다. 이는 자활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권에 근거한 법적 기반과 효력권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 각 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과 내용을 정리하면, 법규명은 「자활사업 지원 조례」로 조문 내용은 대체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기능, 우선구매 지원 등, 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구성항목과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장기관과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역할을 바탕으로 하는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성항목과 내용이 차별적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우선구매지원에 있어 지역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자활생산품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명시되어있다. 일부지역의 경우 ‘매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고 정리되었고 필요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이 항목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경우,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을 누리집에 공표하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전라남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채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인증 마크 제공하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자활센터협회에 대한 역할과 예산지원을 명시하였다. 제주의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미설치 기간 동안 지역자활센터협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1〉 전국 시·도 자활지원조례 현황

연번	법령명	지역명	제정/ 최신개정일	소관부서	구성	주요사항
1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09.12.31/ 23.1.2	사회적 일자리과	목적, 정의,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활지원계획 수립, 우선구매 등 지원, 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기업 인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 빈곤 문제해결과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 ·광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기업지원 ·자활공동체 자활기업 명칭변경개정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를 경기도사회복 지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 대행 ·경기도지사 표창 및 인센티브 ·자활상품 유통판매망(서로 좋은 가게) ·경기도와 목적 동일 ·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능대 행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자활계정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능대 행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
2	전라북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전라북도	10. 3.12/ 23.12.8	사회복지 과	목적, 정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 활지원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등 지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지원	·경기도와 목적 동일 ·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능대 행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자활계정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능대 행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
3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11. 3.17/ 17. 1. 5	자활지원 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자활지원계획 의 수립,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자활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항에 자활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각호로 규정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각 호로 규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발굴 각호 에 구체적 명시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4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17. 9.28/ 	사회복지 과	목적, 정의, 도시사의 책무, 자활지원계 획수립,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지정 등, 위원회의 설치 운영,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 우선구매 등 지원, 포 상, 시행규칙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항에 자활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각호로 규정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각 호로 규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발굴 각호 에 구체적 명시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연번	법령명	지역명	제정/ 최신개정일	소관부서	구성	주요사항
						광역자활센터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개 발비를 지원받음 ·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가 기능대행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
5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15. 5.21/ 17.12.28	사회복지 과	목적, 정의, 도시사의 책무, 자활지원계 획수립, 자활사업지원, 광역자활센터 설 치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경상 북도 인증 자활기업, 우선구매 등, 평 가, 포상, 시행규칙	·자활사업지원 조항에 예산지원 절차와 방법,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 명시 ·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에서 2호,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 업·창업지원 및 알선 명시 ·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가 기능대행
6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17.12.29/ 	복지정책 과	목적, 도시사의 책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자활사업실 시기관 지원, 전문가채용, 지역자활센터 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포상, 시행규칙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항목에 자활생 산품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 지역자 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사업단에 대 한 기능보강 사업, 우선구매에 대한 실 효성제고를 위해 매년 도 신하기관 구 매계획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지 등에 공고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항목에서 도지 사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제수당 및 역량강화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함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을 육성,

연번	법령명	지역명	제정/ 최신개정일	소관부서	구성	주요사항
						인증마크와 도모게제
						[타 지역 차별성] -지역자활센터 협회에 관해, 예산 지원 가능성을 명시함.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채용을 명시함.
7	인천광역시 지활사업 지원조례	인천광역시	10.4.26/ 22.12.30	인천광역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 시행규칙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활지원계획수립, 자활사업지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센터의 사업, 센터의 지원, 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센터의 지도·감독, 시행규칙	·개정이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민관협업기구 설치 운영 및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등 용어의 정비 ·개정이유: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등 관련 명칭변경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자활지원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됨 ·인천광역시자활센터장은 시장이선임하고 임기 3년으로 연임으로 규정됨, 운영규정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은 센터의 필요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인회계

연번	법령명	지역명	제정/ 최신개정일	소관부서	구성	주요사항
						사 회계감사를 받아 3월 말까지 시장에 제출해야 함
8	부산광역시 지활사업 지원조례	부산광역시	18.1.10/ 23.10.11	부산광역시	목적, 정의, 시의 책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자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기능, 포상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 부산광역시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의결권 부여 [최신 개정] 자활기업 지원 보강, 우선구매 촉진 조항 신설
9	대구광역시 지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12.3.30/ 19.10.30	대구광역시	목적, 정의,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등, 자활사업지원, 포상, 시행규칙	·정의 항목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등 명칭변경에 대한 개정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제3조 항목 신설 ·자활지원계획 및 관련 회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10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18.12.31/ 23.8.10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목적, 정의,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 광역자활센터 지원, 자활지원계획수립, 자활사업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 광역자활센터, 포상, 시행규칙	·제주조례의 지원 내용과 일부 유사함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자활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
11	강원특별자치도 지활사업 지원조례	강원특별자치도	19. 4. 5/ 23.6.9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자활사업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 광역자활센터, 포상, 시행규칙	·자활사업 지원에 자활사례관리지원 강화와 지역특성 기반 자활사업 발굴, 강원 자활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 지원
12	광주광역시 지활사업 지원조례	광주광역시	19. 4. 15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활사업을 위한 유, 무형의 기능보강 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업기구 설치 운영

연번	법령명	지역명	제정/ 최신개정일	소관부서	구성	주요사항
					등, 지역자활센터 지원, 포상, 시행규칙 자활기금의 설치, 포상, 시행규칙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자활지원계획 의 수립,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 능, 자활사업지원, 자활사업 관련 단체 등 지원, 인증 자활기업, 포상	· 경상북도와 유사
13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19. 12. 17	대전광역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자활지원계획 의 수립, 자활사업지원, 우선구매 등 지 원, 포상, 시행규칙	· 부산과 유사
14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울산광역시	20. 7. 9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자활지원계획 의 수립,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자활사업지원, 인증자활기업, 시행규칙	· 경상북도와 유사
15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20. 12. 31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목적, 정의, 도시사의 책무, 자활지원계 획의 수립, 자활사업지원, 광역자활센터 지원, 광역자활기업, 위원회의 설치, 포 상	·도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도가 실시하 는 사업의 우선위탁,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시행주체 구체적 명기, 자활을 위 한 사업자금 융자,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를 위 한 매년 구매계획 및 실적 종합관리하 고 경상남도 누리집 공표
16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경상남도	23. 8. 3	경상남도		

2.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조례 현황

○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는 2019년 1회기 기간 내 강원도사회문화위원회 윤지영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자치법규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4391호로 2019년 4월 5일에 공포되었다.

○ 조례 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만성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립생활 능력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 강원 자활지원 조례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자활사업 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포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지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조례 중 일부>

제5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와 알선, 창업·기술개발·경영지도
4. 자활사업실시기관 설치·운영 및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5.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 생산품 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강원특별자치도 자활 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 지원 <개정 2023. 6. 9.>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 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노동사업단 등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상기와 같이 강원 자활지원조례에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있다.

○ 2019년 자활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제정된 강원 자활지원 조례는 최초 입법 제안 시 제출한 하기의 항목이 삭제되고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점은 제정 당시에도 현장의 아쉬움을 모으게 했다.

<최초 입법 제안내용 중 삭제사항>

- 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4)에 관한 사항
- ②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 및 기능보강
- ④ 국·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해당하는 자활기업과의 수의계약 가능
- ⑥ 자활생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
- ⑦ 자활기업 설립·운영지원 및 자활기업 전문인력 활성화 지원사항
- ⑧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항목에 갈음하는 “강원도 자활사업발전위원회 조직 및 구성”

3. 자활사업 지원 조례의 적용 실태

1) 자활사업 조례와 자활기금의 연관성

○ 자활사업 지원 조례는 그 근거로 예산이 수반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업으로써 실효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규 예산(일반회계) 수립은 통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반해 자활기금은 사전 계획이 전제된 예산 집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자활지원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활기금을 통한 실행 재원 확보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

○ 자활기금은 예산이외에 자활사업에 활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한 자원금으로 201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35개 지자체(17개 시·도, 218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 규모는 5,279억원이며, 누적집행액은 1,664억원(집행률 31%)로 당시 3,615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었고(조성은, 2017), 2018년 말 현재는 시·도와 시·군·구에 약 4,000억에 이르는 규모로 마련되어 있다.

○ 강원도 자활기금 평균 보유액은 30억 정도이고, 평균 사용액은 2.8천만원

정도이다. 사용액의 수준은 해당연도에 조성된 직전년도 말 기준 기금 잔액의 10%(이자 조성액 수준) 내외이다. 결국, 원금 외 이자 조성액을 기준으로 사용액을 정하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시도의 경우, 시군과 같이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 활동 결과 발생하는 지역자활기금 등의 원금 조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

<표-2>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전년도 말 현재액(A)	2023년 증감액			당해년도 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계	
2023	3,085,650	276,476	280,390	△3,913	3,081,737
2022	3,052,633	305,424	272,407	33,016	3,085,65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0,000천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보장기금(자활기금) 설치·운영 조항에 따른 자활기금 활용은 강원도 경우, 합리적인 기금운용 계획과 목표가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 수반의 형태로 자활기금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지원계획이 오히려 경직된 자활기금 예산 편성의 행정적 근거로써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 현장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신규사업을 매년 기획·제안하고 있으나, 이자 조성액 수준으로 집행해야 하는 실무 단위의 제약으로 인해 평균 3년에 한 건 정도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정도이고, 현재 편성된 총 11개의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교육훈련비 및 자활근로사업 개발과 경영지원사업, 행사 중심의 사업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문가 인건비 지원사업(광역자활기업)과 융자지원사업”만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기금 예산 편성이 부족한 편이며, 신규 사업 제안에 있어서도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로 판단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

<표-3> 강원도 자활기금의 지원대상별 편성 현황(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 융자사업(1개) 제외

구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자활기업	기타
예산액	21,600	133,600	31,200	25,000
사업개수	1	5	1	3
주요사업내용	홍보 및 교육비 (운영비)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육, 컨설팅, 신규사업개발	전문가인건비지원	민관연찬회 광역센터 교육비

○ 자활사업지원 조례(자활사업 지원 조문내용)와 자활기금 조례(기금의 용도 조문내용)를 비교해보아도, 기금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의 내용이 자활사업 지원조례에서는 자활기업의 관련 항목은 “자활을 위한 창업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내용 외에 명시한 내용이 없어, 자활기업에 대한 확장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상의 기반은 부족해보인다.

2)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적용 실태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및 자활사업 지원조례 4조,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매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로 제출한다.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현황은 각각 46,386백만원, 49,453백만원, 48,684백만원으로 연평균 48,174백만원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국비 매칭 예산을 제외하면 각각 510백만원, 517백만원, 482백만원으로 연평균 503백만원을 수립하고 있다.

〈표-4〉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명	예산액			매칭자금
		2022	2023	2024	
자활근로사업	일반회계	34,940	34,834	32,798	국도시군비 80:6:14 90:3:7
광역자활센터 운영	일반회계	595	603	616	국도비 70:30
지역자활센터 운영	일반회계	5,757	5,831	6,456	국시군비 70:30
자활센터 기능보강	일반회계	35	30	0	도시군비 50:50
자활사례관리 지원(국비)	일반회계	103	123	125	국시군비

사업명	재원명	예산액			매칭자금
		2022	2023	2024	
					70:30
자활사례관리 지원(도비)	일반회계 (도비 100%)	202	205	220	도시군비 20:80
자산형성지원사업	일반회계	4,479	7,543	8,154	국시군비 80:20 90:10
강원형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기금	273	282	262	도100%
합계		46,384	49,451	48,631	
합계 - 단순 국비 매칭 사업 제외		510	517	482	

※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 인용

※ 음영표기 사항은 도비 예산 수립을 통한 사업 추진 항목, 미표기사항은 국비 비율 매칭 사업

○ 도비 예산(시군 매칭 예산 포함) 수립을 통한 사업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5〉 도비 예산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재원명	추진 기간	수행주체
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역자활센터 시설보강 (예 : '23, 양구센터 기능보강)	도시군비 50:50	계속사업 (필요 시 매칭 지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지원		국비 사례관리사 미배치 지역 전담관리자 인건비 (7개소)	도시군비 20:80	2022~	지역자활센터 (7개소)
강원형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사업실시기 관 역량강화	지역자활센터 홍보 및 교육비(운영비) 지원	자활기금 (시군기금 매칭사업)	2020~	지역자활센터
	자활한마당 및 박람회	자활한마당 및 상품박람회 개최	자활기금	2010~	광역자활센터 (협회 공동주관)
	자활사업 민관연찬회	민관토론회 및 공무원 직무연찬회	자활기금	2010~	광역자활센터 (협회 공동주관)
	자활참여자 감수성 훈련	참여자 대상 정서적 자 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활기금	2021~	광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경영컨설팅	자활근로사업단 경영지 원 및 상품판로지원	자활기금	2014~	광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강원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자활기금	2016~	광역자활센터
	전문가 인건비 지원	광역자활기업 전문가 인 건비 지원(지침에 의함)	자활기금	2022~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교육훈련	자활근로, 자활기업 참 여자 대상 교육	자활기금	2013~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대	자활기금	2023~	광역자활센터

사업명		주요내용	재원명	추진 기간	수행주체
	교육훈련	상 교육			
	자활지원 용자금 운영비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 업단 대상 용자사업 운 영비	자활기금	2010~	광역자활센터
	자활지원 용자금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 업단 대상 용자사업	자활기금	2010~	광역자활센터

○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사업비(자활기금)의 경우,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첫 번째 실천사례로 지역자활센터의 부족한 운영비 지원의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시군 자활기금 매칭 형태로 실시함으로써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지속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비 지원 성격의 첫 사업으로써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은 2022년도 신설사업으로 게이트웨이 및 국비 지원 자활사례관리사가 미배치되어있는 7개소의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를 배치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성격의 일반회계사업이다. 강원도의 경우 참여자 감소 문제로 사례관리사가 미배치된 지역자활센터가 38%를 차지한다. 참여자수가 적어서 미배치된 지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내에서도 고령화와 복지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지역으로 어느 곳보다도 자활 사례관리사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사업은 기존 사례관리사 배치 지원이 못미치는 태백, 영월, 평창, 양구 등 농촌지역의 자활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자활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건비성 일반회계 사업이고, 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기타 조례 기반 신설사업은 2021년 참여자 감수성 훈련(집단상담프로그램), 2022년 광역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2023년 광역자활센터 교육훈련비로, 2021년 도내 참여자 근로능력미약자 증가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참여자 감수성 훈련 사업 외에는 지역사회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는 형태의 사업은 신설되지 못했다. 그간 중견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자활기업 광역화를 위한 사무국 구축 지원사업 등, 도내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제안적 시도가 있었으나 자활지원 조례 상의 근거 기반 미비로 심의과정에서 확정되지 못했다.

III.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개선방안

1. 강원 자활사업의 현황

○ 강원자활사업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강원자활사업 일반현황(2024) >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 인용)

○ 지역자활센터 현황

(2023.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센터수	종사자수	자활근로		자활기업		비 고
		사업단수	인원	기업수	인원	
18	160	248	2,344	58	509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023. 12월말 기준, 단위 : 명)

합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소 계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1,642	1,196	367	192	635	2	446

○ 자활근로사업 현황

(2023. 12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합계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움형		시장진입형		Gateway		기타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사업수	인원
227	1,642	7	60	135	1,134	24	39	37	206	18	130	6	73

○ 자활기업 현황

(2023.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현 황 (합계)			광역자활기업			지역자활기업		
개소	직원	연매출액	개소	직원	연매출액	개소	직원	연매출액
58개	558명	21,323	1	5	1,224	57	553	20,099

○ 강원도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1.7%로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17.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는 감소 추세로 ‘초고령화와 지

역소멸’이라는 두 가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1년 10월,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살리기를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강원도의 경우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10. 18 인용)

- 1인 가구 역시 ‘17년 대비 ’ 21년 4.2% 증가한 36.4%로 철원과 양구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원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독거노인 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다.(통계청) 전반적으로 일반수급자의 비율이 85%로(태백 등 5개 시군의 경우 90% 이상) 높은 편(공공데이터 포털)이며 이는 고령화, 의료수급자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자활사업 참여자 역시 위와 같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일반수급자 비율 증가 추세이며, 66% 농촌지역인 강원지역의 특성 상 거의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넓은 면적과 인프라 부족의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주요 현황>
(2022, 강원광역자활센터 전수조사 결과)**

- 1인 가구 증가 추세(32.2%(’17) -> 36.4%(’21)) :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이며, 수급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57.4% 차지
- 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증가 추세(동해, 태백, 평창, 정선, 철원 90% 이상 차지)
- 60세 이상자 53%(평창, 정선, 철원, 화천, 고성, 양양의 65세 이상 수급자 50% 이상 차지)
- 2개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보유한 참여자 33.7% 차지

- 자활기업은 전국적 추이와 같이 폐업 및 인정취소로 감소 추세이나, 참여자 자활역량 감소로 신규 창업 개소수 역시 감소 추세에 있어, 자활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개선방안 제언

- 앞서 말했듯이 현재 강원 자활지원 조례는 실효성, 확장성, 지역특성 반영의 모든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다. 특히 확장성과 지역특성 반영 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명시한 보장기관과 자활사업의 기능과 역할의 일

반적인 내용 외의 측면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활지원조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제될 것은 지방의회와 보장기관의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지원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 자활지원 조례는 반드시 지역의 실태와 현안 분석을 기초로 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지원계획 심의·의결기구를 기존의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하는 구조가 아닌 별도 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활지원계획 및 자활사업지원 등, 심의·의결권한을 부여하고 자활 전문가들이 주체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와의 일부 연관성을 두어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겠다.

2) 자활지원계획 수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다. 사회보장계획과 마찬가지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궤를 같이하는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상호 연관성을 가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전체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어떤 구성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와 현장전문가가 함께하는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자활지원계획의 기본 틀이 마련된다면 매년 수립해야 할 자활지원계획은 보장기관과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협회, 광역자활센터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자활기금과의 연관성 제고를 고려한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개정

○ 강원도의 경우, 자활사업 지원 조례(자활사업 지원 조항)의 내용이 포괄적이며 협소하게 명시되어 있다. 자활기업의 지원에 대하여는 “창업지원” 정도로 거의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 자활기금 조례(기금의 용도)의 내용을 담은 만큼의 지역사회 자활사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 조례의 기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지원 조례 추가(개정) 제안 - 자활사업 지원 조항 -

- 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4)에 관한 사항 명시
→ 지역자활센터 교육훈련 및 연대사업 추진 근거 확보
- ②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수립 명시
→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육성 분야의 확장적 시책 마련을 위한 추진 근거 확보
- ③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 및 기능보강 내용 명시
- ④ 국·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내용 명시
→ 인프라 확대를 위한 추진 근거 확보
-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해당하는 자활기업과의 수의계약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의 공공계약을 자활기업까지 지속가능케 하는 추진 근거 확보
- ⑥ 자활생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
→ 도 단위 상설 판매장(또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추진 근거 확보
- ⑦ 자활기업 설립·운영지원과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및 전문인력 활성화 지원사항
→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공동인프라(공동사무국 구축 등) 구축 근거 확보
- ⑧ 우선구매의 경우, 매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명시
→ 시도 단위 우선구매 활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근거 확보

4) 시도 자활기금 조성액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 마련 필요

○ 앞서 말했듯이,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실효화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다. 잘 기획된 시도 자활기금 사업은 시군 자활기금 매칭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좋은 교두보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도

자활기금의 경우 시군 자활기금과 다르게 원금 조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 계획 수립에 있어 경직성이 있다. 이러한 조성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 자활자금을 시도 단위로 배분하는 형태의 재원 확보를 제안해본다.

○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일부 중앙자활자금 사업을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단위에서 기획·심의된 사업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시도 단위의 자율적이고 연대적인 사업 기획과 추진을 위해 규모별로 차등하여 중앙자활자금을 시도 단위로 배분지원하고 시도 자활기금을 매칭하는 형태로 추진한다면 지역 단위의 고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기존 사업 검토와 정비

○ 강원도의 경우, 중앙 단위 정책과 지역 단위의 현안에 맞추어 사업들이 신설되어 왔다. 특히, 19년 조례 제정 이후 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지원, 21년 참여자 근로역량 저하에 따른 도단위 참여자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업, 22년 사례관리 미배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례관리사 배치지원(인건비성) 사업이 그러하다.

○ 그 외의 사업들의 경우,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사업(경영 및 교육지원, 지역특화 사업개발, 전문가인건비지원, 융차지원 및 기타 연대행사 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자활기금을 통한 각종 사업장환경개선(기존 및 신규 자활사업단에 대한 인프라 지원) 및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및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표준화된 사업들이 현장에 지원되고 있어 고령화 및 지역소멸의 지역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시책과 부합하는 지역의 특성화 사업 및 규모화 사업, 자산화 사업 등 지역 자활사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굵직한 통합사업 또는 신규사업 등을 기획하여 차년도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

강원형 표준조례안 마련을 통한 자활사업 지원 제고

이 경우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정책위원장

강원형 표준조례안 마련을 통한 자활사업 지원 제고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이경우 정책위원장

○ 들어가며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의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활사업의 핵심프로그램은 자활근로사업이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의 핵심 기반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며, 2023년 현재 전국적으로 250개소,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양구군을 끝으로 18개 시·군 모두에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의 실시를 통한 일자리 제공,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등이며,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적인 전달체계를 구성하여 빈곤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자활사업은 중앙정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기반하는 지역복지사업이다. 자활사업의 핵심프로그램인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 내 인식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지역 맞춤형 자활사업을 수행해야하는 현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국적인 통일된 표준안이 필요하다. 16개 시·도에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적용되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와 같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인건비성 지원 등의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각의 조례를 분석하여 더 발전되고 필요한 항목을 함께 넣어 표준화된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시·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에 자활사업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은 5년 전인 2019년도이다. 제정 당시 민·관토론회 등을 통해 비교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라 볼 수 있다. 지원조

레가 제정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라는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조례가 개정을 통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아쉬움이 존재한다

같은 특별자치도로서 강원특별자치도보다 2년 전인 2017년에 지원조례를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조례만 보더라도 지역자활센터로 대표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채용과 인증 마크를 제공하는 자체 인증 자활기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역자활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부족이다. 자활센터의 예를 들어보면 6단계의 규모화된 단계로 나누어 직원들의 호봉, 인원수 등 센터별 상황과 상관없이 예산을 정해서 운영비가 책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에서처럼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채용 등의 인건비는 센터운영비나 자활근로사업비 등에서 더더욱 예산 수립이 센터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사업 자체적으로는 지역에 맞게 구성하고 수행되어야겠지만, 지원 방법이 주로 예산 지원임을 감안하면 지원 조례는 그에 맞게 개정되어야 되고, 그러한 지원관련 항목은 시·도가 통일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양구군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조례

지역자활센터의 입장에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조례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광역단위로 이루어지는 소수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가 더 와닿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기 시·군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찾아보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지원의 방법을 예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관련 조례가 자활사업 지원 조례와 다르다 할 수 없다.

자활기금 투입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자활기금 사용에 관한 항목에 예산 지원 관련 항목을 조례에 넣어 법적·행정적 근거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구군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의 융자 사업이 중심 항목이며,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보다 후퇴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에는 양구군의 포괄적인 조

례 내용을 포함하고 기능보강비 및 자신회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들어있다.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원들을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소통해야되는 기초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의 관계에서 조례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도 내 기초지자체의 관련 조례 또한 광역지자체의 자활사업지원조례의 경우와 같이 보다 발전되고 현실의 목소리를 담은 통일된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마무리하며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정 후에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적 변화를 읽으면서 보다 발전된 조례를 마련해 가야할 책임을 자활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의 책무이다. 현재의 광역지자체들의 조례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표준화된 조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 첫발걸음이 될 것이다.

예산지원이라는 지원 방법의 핵심이 되는 자활기금에 관해 관리적 측면에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초두에 이야기 했듯이 자활사업은 지역에 맞게 사업들이 만들어져 간다. 지역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 지역의 광역지자체를 통해 자활기금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이슈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위기이며 노동집약적사업으로 대표되는 자활사업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원 조례의 현실적 개정을 통해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자활사업은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90년대 말의 IMF 시기, 2008년의 금융위기 등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도 그 역할에 소홀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발전된 변화를 통해 잘 해낼 것이라 자활사업 구성원으로서 자신한다. 그동안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2

자활기금 활용 인식전환을 통한 조례 개정 구체화 필요

이강익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자활기금 활용 인식전환을 통한 조례 개정 구체화 필요

이강익(강원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024.4)

○ 자활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저를 귀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짧은 경험을 토대로 발제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1. 발제 내용 요약

○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조례의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자의 발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
- 둘째, 자활기금의 용도의 내용을 담을 만큼 포괄적이면서도 구체화된 조례 내용 명시
- 셋째, 중앙자활기금과 연계한 지역자활기금의 효과적 활용

<참고>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의 용도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노동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20.5.15.>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2. 자활사업 지원조례 및 자활기금 조례 내용의 확충 및 구체화에 대한 의견

- 본 토론자의 자활센터 운영위원, 자활기금 심의위원, 중앙지원조직에서의 자활기업 지원 등을 경험하면서, 발제자가 제안하는 8개의 조례 항목은 강원도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꼈음
- 예를 들어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자활영역을 넘어서서 볼 때)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비해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강제 조항은 아니라더로 상징적인 차원의 권고 조항이라도 자활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관련되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발제자의 조례 제안 중 8번)
- 자활기업의 확장 및 규모화를 위한 공동사무국 및 전문인력 확보는 중요한 과제임
 - 자활기업 자체에서 공동사업을 위한 여력(전문인력 확보 등)을 내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공동사업을 광역자활센터 직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광역자활센터 직원은 공동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지원 인력임. 이 직원이 사업 주체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제 이런 역할을 할 헌신적인 직원을 찾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임
 - 따라서 자활기업 설립·운영 지원과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및 전문인력 활성화 지원 사항 (조례 제안 7번 항목)은 도 조례에 잘 반영되었으면 함
- 발제자가 언급한대로, 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조례’와 ‘기금 조례’를 통해 기금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목적,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그러나 자활기금 조례를 포함한 상당수의 조례는 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을 이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을 낳게 되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기금 사용에 대해 보수적인 해석을 내릴 여지가 있음
 - 기금의 지속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발제자가 언급한 대로 지원 조례의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구체화한 뒤에, 기금 조례에서 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기금 사업의 기본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현행 기금 조례에서는 자활기업 육성과 관련한 내용은 ▲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자활기업 육성 차원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사회적가치(또는 ESG) 증대에 기여하는 자활기업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의 용도와 사용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함

3. 자활기금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자활기금 조성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자활기업 활성화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음
 - 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또한 기금 운영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자활기금은 주로 이자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자활기업의 규모화나 자산화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행정 담당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행정 담당자의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이유는,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 부담이나 기금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행정담당자는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에 대해 소극적인 토대를 가지게 됨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및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주고,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돈임.
 - 따라서 자활기금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활기금에 대한 행정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은 위기 상황에 있는데, 기금만 잘 살아남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이라는 기금의 본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면 본 토론을 마치고자 함
- 감사합니다.

[illegible]

<권역자활 정책포럼> 토론문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 김경환 대표님 발제에서 나와 있듯이 자활 관련 지원체계는 지적해 주신대로 법령과 제도를 통해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지역 현실을 반영한 <조례>의 내용이 되고 있는지, 현행 조례가 구체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함
- 조례에 따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의 경우 2023년 10개 사업, 4억550만원이 투입됐음
- 이중 자활근로사업단 22개소와 자활기업 23개소 임대료 지원이 45건, 2억6000만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9개 사업에 투입됐음
- 얼핏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으나 다른 기금과 보조금 사업 등을 감안하면 사업별로 750만원(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5개소)에서 자활기업 등 지역특화사업 지원 3000만원(2개기업)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음
- 특히 2023년 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가 751명, 자활기업이 20개소 인 점 등을 감안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발제에서도 지적했듯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기금 수입원에 대해서 구체화된 개선방안 마련이 있어야 함
- 또한 제주지역 자활 기관단체 차원에서 기금 확대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함 (예산 대응, 자활 활동 관련 사회화 등)

○ …발제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을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첫째 현안 해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자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서 적극 필요해 보임

세부적으로 제안한 <광역자활센터 설치와 기능 신규 조항 추가> 등에서도 전향적으로 집행기관이나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지역 자활 체계 정비와 자활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사항과 조례 개정사항이 있는 만큼 22대 총선 이후 국회와의 협력, 지방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활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함

○ …아울러 제주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및 자활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확산 전략이 있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 조례에는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사업 활성화 정책 ▲자활사업실시 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자활사업 전문가 채용 지원 ▲지역자활센터협회 관련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놓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차원에서도 이행평가도 필요하지만 자활기관단체 및 관련분야 전무가 차원에서도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집행여부와 현실적인 이행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실제로 자활 관련해서는 자활지원계획도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 5개년 계획이 있으며, 매해 연도별 시행계획이 존재함

이 중 2024년의 경우 ▲ 자활창업기업 지원(제주광역자활센터운영) ▲ 자활기업 활성화 복합공간지원(자활기금 활용 자활기업 활성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5개년 계획의 적실성과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해야 함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언론과의 협력, 도의회와의 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회적경제와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함

MEMO

[illegible]

[illegible]

4

지역자활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양기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토론
5

자활사업지원조례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안 미 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지원실장

자활사업지원조례 적용실태와 개선방안(토론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지원실장 안미현

□ 오늘 ‘찾아가는 자활정책포럼’ 논의 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지원조례의 지자체별 적용 실태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현장의 자활사업지원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강원광역자활센터(박미라) 발표는 모든 광역시도의 자활사업지원 조례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대체로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기능, 우선구매, 포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조례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교육훈련예산 지원을 명시(전남, 제주)하고, 또한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채용과 자활기업 인증(마크),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역할과 예산지원을 명시한 점(제주)이 도드라진다고 분석하면서 나아가 자활지원위원회, 자활지원계획, 자활기금, 중앙자활자금 등 자활지원의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제주의 일하는 사람들(김경환) 발표는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역자활센터협회 지원 및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협회(지부)의 역할 정립을 조례에서 정리하고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민간전달체계를 체계화하고, 자활기금과 중앙자활자금의 상생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강원광역과 제주광역의 자활사업지원조례 적용실태와 개선 방안은 각 지자체별 지원조례의 유사 사례와 특수한 사례의 특징을 잘 분석한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조례의 개정방안을 도출하고, 광역시도 외에 시군구의 자활사업지원조례 제·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오늘 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이견제시보다는 자활사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초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한 자활사업지원제도(법, 령, 규칙, 조례 등)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며, 특히 자활기금 표준조례(안) 제정·운영의 경험¹⁾을 발전적으로 활용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자활사업지원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자활사업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1) 자활기금표준조례(안) 제정(2012년)과 개정(2016년) 추진 당시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표준조례(안) 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표준조례(안) 제시를 통해 자활기금 운용의 폭을 넓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음. 최종적으로 표준조례(안)를 만들고 전파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가 자활기금조례를 갖추고 자활기금을 조성한 바 있음(조례 미제정 8 지자체, 기금 미조성 10개 지자체, 2014년 조사)

하는 시발이 되기 바람

자활사업지원조례는 자활급여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으나 조례가 가지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기초법은 자활급여²⁾ 이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육성법이 아님)이므로 기초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만으로는 이미 법제정 후 25년이나 지난 지금시기 자활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모두 규정하거나 정책의 유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자활사업 관련 지원은 기초법의 자활급여 관련 피상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강제규정이 없고, 지역마다 상황마다 해석상 편차가 발생하여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의 불비한 조례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자활급여, 즉 자활사업지원은 당위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업취지의 정당성과 제도적 정합성이 필요하며, 관계법령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추진 근거(하위법령)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조례 참고)

○ 자활생산물(또는 서비스 용역) 우선구매, 자활종사자 처우, 지역자활센터협회와 광역자활센터의 관계, 광역자활센터나 광역자활기업의 위상 및 역할, (광역)자활기업 설립·지원 및 취소, 자활기업 및 자활기업 종사자 관리, 자활기금 및 중앙활성화자금 등 많은 사례에 있어서 자활지원사업(자활급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정부는 이미 ‘자활급여법안(의안번호 7818, 2007.11.16. 제출)’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급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 단체장이 특화된 자활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자활사업의 내용, 보장비용 부담 및 추가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자활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주거급여의 예를 보면 개별급여가 시작되면서 주거급여법을 제정(2014년)하고 기초법의 주거급여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기초법이 담지 못하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비지원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15조(자활급여)는 자활급여 대상자와 자활급여의 내용을 정의하고, 세부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자활사업지원 관련 장단기 전략이 필요함

● 첫째, 장기적으로 ‘자활급여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에 따라 자활지원기관의 전달체계를 명료화하고, 중앙자활자금 및 자활기금, 자활사업비 및 매출액 관리 등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자활현장에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단기적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정착된 자활기금조례를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자활사업지원조례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둘째 의견과 연결하여 자활사업지원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기타 유관법률³⁾에 대한 전향적이고 사전적인 인식 필요함

기초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움직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하고 있으나 유관제도(법, 령, 규칙, 조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참고) 기초법 외 자활기금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자활사업의 근거법인 기초법 외에 자활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으며, 특히 예산운용, 자활기금 등은 별도의 관련법을 잘 이해해야 자활사업지원에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활기금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활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적시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MEMO

[illegible]

별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여 지역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 2. “자활노동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개정 2020.5.15.>
-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2.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
-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와 알선, 창업·기술개발·경영지도
- 4. 자활사업실시기관 설치·운영 및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 5.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 6.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 생산품 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 8. 강원특별자치도 자활 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 지원<개정 2023. 6. 9.>
-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 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노동사업단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5.>

-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 2.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 3.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 15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91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2.] [경기도조례 제7530호, 2023. 1. 2., 일부개정]



경기도(복지사업과), 031-8008-568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와 시·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08.03.>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5.08.03., 2023.1.2.>
6. “광역자활기업”이란 도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08.03.>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8. “경기도 인증 광역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증한 광역자활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08.03.>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경기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공동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23.1.2.>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1.>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1.>
3. 다음 연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5.11.>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도 및 시·군 공공구매(조달)시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 및 판로지원

[전문개정 2015.08.03.]

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3.]<개정 2023.1.2.>
③ 도지사는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④ 도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제6조(광역자활센터)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15.08.03., 202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1.>

제7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개정 2015.08.03.>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자활기업 등 생산품 판매장(서로좋은 가게)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신설 2015.08.03.]
8. 자활사업 우수 시·군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신설 2015.08.03.]
9. 그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광역자활기업 인증)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광역자활기업은 “경기도 인증 광역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③ 광역자활기업 인증서 교부 시 경기도 인증브랜드(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8.0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조례 제5440호, 2023. 8. 3., 제정]

경상남도(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055-211-48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6. “차상위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3.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사례 관리
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5.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광역·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② 도지사는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2.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도지사는 도내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본청 및 직속기관 등의 공공구매 시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3. 도 공유지(公有地) 우선 임대
4.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④ 도지사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경상남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원) 도지사는 광역자활센터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제7조(광역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을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을 인증한 경우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은 광역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광역자활기업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
2. 광역·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8.] [경상북도조례 제4039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6.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 지원
6.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제10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받지 않은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준용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우선구매 등)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2.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3. 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0조(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필요한 경영지원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자활·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참여자
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자활자립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201호, 2019. 4. 15., 제정]

광주광역시(돌봄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추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추진에 필요한 자치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7.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의 설치·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광주광역시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2.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3. 영 제22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6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6. 자활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기능보강 지원
7.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지원
8.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9.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의 발굴
10.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보조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의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③ 시장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운영

7.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에 대한 평가기준, 회계감사,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공개, 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6조의4제1항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0조(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광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활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3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신설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30.] [대구광역시조례 제5346호, 2019. 10.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복지정책과), 053-803-39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7.2.>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8.7.2.>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군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8.7.2.>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8.7.2.>, <중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7.2.)>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7.2.>, <제4호에서 이동 (2018.7.2.)>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7.2.]

제4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④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18.7.2.>]

[전문개정 2018.7.2.]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1. 대구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7.2.]

제6조(포상) 시장은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7.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28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6호, 2019.10.30.>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시행 2019. 12. 27.] [대전광역시조례 제5396호, 2019. 12. 27., 제정]



대전광역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3.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 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2.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 3.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 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 5.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자활사업 관련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96호, 2019.12.27.>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3. 10. 11.] [부산광역시조례 제7065호, 2023. 10. 1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 051-888-31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0. 11.>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군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1.>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3. 10. 11.>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의2(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7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5. 16>

제8조(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사회복지위원회 조례)<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과), 02-2133-75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9. 28., 2020.12.31>

-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 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5.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 5.>

-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 1. 5.>

- 1. 창업지원
- 2. 취업지원
- 3. 교육훈련
- 4. 연구·조사활동
-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 6.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 5.>

-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4. 창업 및 경영 컨설팅
- 5.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 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 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12. 9. 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서울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9. 28., 2017. 1. 5.>

③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9. 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4. 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22호, 2022. 4. 2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복지정책과), 044-300-33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제2조(기금의 조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3. 21.)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6. 3. 21.)
2.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자활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자활기업의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 나.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지원
 - 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식증진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 마. 자활제품 판로 개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본문 개정, 2016.12.2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6. 3. 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6. 3. 21.)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기금지출의 20퍼센트 이하)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6. 3. 21., 2016.12.20.)
6.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신설, 2016.12.20.)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

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일부개정, 제443호, 2014.1.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8. 10.)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자활기업의 사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개정, 2016.12.20.)
2.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의 자립지원 사업
3.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개정, 2016.12.20.)
- ②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③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상황, 대여금상환 여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1.)

제8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하여 있는 자활센터에 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 지원을 하는 전세점포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지원금을 대여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임대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는 경우에는 자활센터의 평의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임대 지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이자와 제3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1.)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 3. 21.)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에 따라 대여받은 사업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 3.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

제10조 <삭제, 2022. 4. 2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금의 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49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0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같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20. 4. 10.><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운용하되”를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⑨(생략)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⑫ ~ ⑳(생략)

부칙 <조례 제1922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9.] [울산광역시조례 제2195호, 2020. 7. 9., 제정]



울산광역시(복지정책과), 052-229-34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
2.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
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자활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
2.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자활사업 관련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에 우선구매 홍보 및 독려

제8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자활·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참여자
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104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NBSP; <O:P></O:P>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2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군·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6.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12.30.>

1.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

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제8조(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센터장은 조직·인사·회계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
2. 광역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 설치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센터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8.] [전라남도조례 제4417호, 2017. 9. 28., 제정]



전라남도(사회복지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
6.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7.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8.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
2.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
4. 자활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창업 및 경영 컨설팅
4.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5.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6. 자활기업 등 생산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 밖에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역단위 공동사업(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근로사업단) 운영

2. 지역자활센터 기술·경영지원 및 자활기업 창업·취업, 컨설팅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의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전라남도 조례 4775호, 2018.12.31.일자 공포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우선 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2.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전라남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5. 12. 1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4159호, 2015. 12. 11.,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과), 063-280-2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와 시·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12. 11>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개정 2015. 12. 11>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5. 10. 30>
6. “광역자활기업”이란 도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7.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2. 11>
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2. 11>
5.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1>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년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1>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개정 2015. 12. 11>
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6.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광역자활센터)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개정 2015. 10. 30>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그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여성·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7. 12. 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81호, 2017. 12. 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북지정 책과), 064-710-28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3. 제주자치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능보장 사업
 6. 그 밖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자치도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기업 등의 운영 지원
 4. 저소득 주민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
 5.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6.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사자 처우개선) 도지사는 지역 자활센터 중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수당 및 역량강화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채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 중 자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자활기업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회계·재무 분야
2. 교육·훈련 분야
3. 기획 분야
4. 인사·노무 분야
5. 법무 분야
6. 영업·마케팅·홍보 분야

제8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3. 지역자활센터 중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7.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1.] [충청남도조례 제4679호, 2020. 4. 1., 일부개정]



충청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활노동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개정 2020.4.1.>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
6.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자활지원계획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성별에 따른 육구를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 지원
6.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 경비의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의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충청남도 자활생산품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개정 2020.4.1.>

6. 그 밖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과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마크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활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의결
 2. 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노동사업 운영<개정 2020.4.1.>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9.4.10.>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32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68호 2019.4.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시행 2021. 5. 18.] [충청북도조례 제4549호, 2021. 5. 18., 일부개정]



충청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2017. 3. 22>[전문개정 2011. 2.11]

제2조(삭제)

제3조(기금의 용도) 충청북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2. 7. 16, 2015. 10. 2, 2017. 3. 22., 2020. 7. 10.>

[전문개정 2011. 2.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2015. 10. 2>
5. 삭제<2015. 10. 2>
6. 삭제<2015. 10. 2>

제3조의2(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 제3조제2호에서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말한다.<개정 2017. 3. 22>

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2. 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3.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장 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6.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 [본조신설 2015. 10. 2] [제목개정 2017. 3. 22]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5. 10. 2>

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③ 삭제<2011. 2. 11>

④ 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목개정 2011. 2. 11]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1, 2013. 10. 31, 2015. 10. 2, 2017. 3. 22., 2020. 7. 10., 2021.5.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7. 시·군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자활을 위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2. 11>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2. 11, 2015. 10. 2., 2020. 7. 10.>

제8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2. 7. 16, 2013. 10. 31., 2020. 7. 10.>

②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자활기업의 점포 전세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2017. 3. 22., 2020. 7. 10.>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2. 10. 4, 2005. 1. 1, 2012. 7. 16, 2015. 10. 2>

⑤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2. 11, 2012. 7. 16, 2013. 10. 31, 2015. 10. 2., 2020. 7. 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7. 16>[제목개정 2013. 10. 31, 2017. 3. 22]<개정 2017. 3. 22>

제8조의2(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 대여)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의 대여기간은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 기간으로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제8조 제4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 3. 22]

[중전 제8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15. 10. 2>]

제9조(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2. 10. 4, 2011. 2. 11, 2012. 7. 16, 2013. 10. 31>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개정 2011. 2. 11, 2013. 10. 31, 2017. 3. 2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1. 2. 11, 2013. 10. 31, 2015. 10. 2, 2017. 3. 22>

[제목개정 2012. 7. 16, 2015. 10. 2, 2017. 3. 22]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2021.5.1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7. 16]

[제8조의2에서 이동 2015. 10. 2][중전 제10조는 삭제 2011. 2. 11]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11, 2015. 10. 2, 2017. 3.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2. 11, 2015. 10. 2, 2017. 3. 22., 2020. 7.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3. 22]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 7. 16, 2015. 10. 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1. 4. 1, 2016. 1. 1>[본조의조 신설 2011. 2. 11]

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5. 10. 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5. 10. 2>

[본조신설 2013. 10. 31]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자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05. 1. 1,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2011. 2. 11, 2015. 10. 2>

제13조(삭제)

제14조 삭제<2020. 7. 10.>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0. 2>

[제14조에서 이동 <2011. 2. 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2>

[본조신설 2011. 2. 11]

부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